

(3) 소금제품에 대한 표준규격품, 품질인 증품, 이력관리품, 지리적특산품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하고,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 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3) 천일염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화함으로써 천일염 소금가공품 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가 될 것 으로 기대됨.

차. 천일염 등의 안전성 조사 등(안 제39조)

(1) 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용수 ·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천일염 또는 소금 가공품의 안 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용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66호, 2009. 10. 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료”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확대,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커피·다류(밀봉제품 제외)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 중 환경 오염물질인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식품 중 신종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퀴나 피페리필 및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에 대한 기준 마련, 방어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버섯 등 13 품목 추가하고, [별표 3] 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 록에 독버섯 등 34 품목 추가

가. “원료”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안 [별표 1] 및 [별표 3])

(1) [별표 1]에 “원료”의 목록에 신제품

나. 이 고시 중 개별동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기준 적용 원칙 개정(안 제 2, 5, 11), (1), ⑤)

다.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안 제 2, 5, 12), (4))

(1)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 중 벤조피렌[Benzo(a)pyrene 규격 신설함.

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안 제2, 5, 12), (2) 및 안 제 10. 7, 7. 4)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퀴나피페리필 및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마.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안 제 2, 5, 16))

(1)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함.

(2)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밀봉제품 제외)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바. 방어(냉장 또는 냉동)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안 제6. 1. 1) (5) 및 2. 5) (3))

사. 동물용의약품인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및 티아몰린의 등의 기준 개정 및 시험법 신설(제 10. 5.) 및 (별표 7)

(1) 겐타마이신의 개별어류에 대한 기준, 네오마이신의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기준, 티아몰린의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관련 시험법 신설

(2) 링크마이신의 시험법 신설

아. 동물용의약품인 트리메토프림, 클린다마이신 및 프라지판텔 기준 및 시험법 신설(안 제 10. 5.) 및 (별표 7)

(1)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 승인되어 있으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트리메토프림, 클린다마이신 및 프라지판텔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자. 동물용의약품의 분류(안 별표 7)

이 고시 및 CODEX에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한 기준적용원칙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 분류 명기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